

#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세칙

제정 2012.01.01

개정 2021.06.01

개정 2021.12.13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장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장심위”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세칙은 위원회 규정 제49조에 의거하여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: 2021.6.1.)

제3조(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: 2021.6.1.)

- ① 연구기관기본사업: 국공립 연구기관, 부처 직할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(출연금)(개정: 2021.6.1.)
- ② 정부위탁연구사업: 연구기관기본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. (개정: 2021.6.1.)

제4조(위원회 구성) 위원회는 ‘국가연구개발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(개정: 2021.6.1.)

- ①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, 간사 1인을 둔다.
- ② 내부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, 총장에게 제청하여 임명한다.(개정: 2021.6.1.)
- ③ 외부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, 외부기관장에게 1인을 추천받아 총장에게 제청하여 임명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: 2021.6.1.)

- ② 위원의 사임으로 승계한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(개정: 2021.6.1.)

제6조(소집 및 의결) 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거나, 위원의 1/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(개정: 2021.6.1.)

- ② 의결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(개정: 2021.6.1.)
- ③ 심의는 최소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, 사정에 따라 년 1회 또는 2회(전·후반기) 심의할 수 있다.

제7조(심의제한) 외부위원은 정부R&D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·장비에 한하여 심의 하며, 대학 예산으로 기술지원팀이 도입하는 장비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.

(개정: 2021.12.13.)

제8조(심의내용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: 2021.6.1.)

①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,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·장비(R&D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균실, 저온실, 동물사육실 등의 시설 포함)에 대한 구축 결정에 관한 사항.(표1 참조) 단, 정부위탁연구사업에 의한 부처수탁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한다.(개정: 2021.6.1.)

② 구축(도입)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목적별 판정에 관한 사항(표2 참조)(개정: 2021.6.1.)

1.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·해제
2.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·해제

③ 구축(도입)된 3천만원 이상 저활용·유휴·불용장비 판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(표3참조) (개정: 2021.6.1.)

1. 저활용·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
2.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, 재배치 및 처분

④ 심의 통과 후 아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 심의가 필요한 사항 (개정: 2021.6.1.)

1. 환율변동,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 % 이상 변경된 경우
2. 사업(과제)계획 변경, 해당 장비 단종,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구축타당성을 인정한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
3. 구축 시기 또는 구축 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
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⑤ 구축(도입)된 3천만원 이상 시제품·시제품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(개정: 2021.6.1.)

⑥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(개정: 2021.6.1.)

1.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·장비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적립할 통합관리계정의 단위 조정 및 승인. 단, 연구책임자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2. 기관 지원금(교비, 간접비 등)과 운영·활용 과정에서의 시설·장비 이용료(시험분 석료) 수입 등의 통합관리 승인
3. 통합 연구시설·장비비가 관련 규정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지출 승인

⑦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(개정: 2021.6.1.)

제9조(회의록) ① 위원회 심의 후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참석위원 전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. 외부 심의위원에게는 회의록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전자메일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운영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운영세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운영세칙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[표1] 장비심의위원회 도입심의대상 여부 판단기준 (개정: 2021.6.1.)

구분	3천만원 미만	3천만원~1억원 미만	1억원 이상
국가연구시설·장비 심의위원회	-	-	심의대상
연구개발과제평가단	-	심의대상	-
장비심의위원회	-	심의대상 (연구기관기본사업)	-

[표2] 활용목적별 연구장비 분류

단독활용 장비	특수목적으로 구축한 연구장비로 주로 연구개발자가 직접 관리하며 구입부서(구입연구실)만 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
공동활용 허용장비	타 연구자에게 장비활용을 허용한 연구장비로 주로 장비보유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, 별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연구장비
공용장비	대외 개방을 위해 장비사용료, 이용절차, 이용시간,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장비로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연구장비

[표3] 장비의 판정기준 (개정: 2021.6.1.)

저활용장비	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장비 사양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 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
	1년 간 장비가동율(장비활용시간 기준)이 10% 미만인 장비(가동율이 낮아도 장비수입금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)
유휴장비	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
	6개월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
불용장비	내구연한 완료 및 천재지변(화재 등)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

	*내구연한: 장비의 물리적 성능이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
	파손, A/S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
	보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*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음.